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외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차세대 전자여권과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하고 여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업무의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차세대 전자여권 및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 1) 차세대 전자여권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 2) 온라인 여권신청의 근거 및 교부거부 및 자료보완 요청 사유 명시, 온라인 신청 여권의 본인 수령의무를 명시하여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5조의2 등)

나.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제도 개선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삭제(안 제7조제1호나목 및 제2호)

-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경우에도 관용여권 발급 대상에 생활능력 없는 부모 추가(안 제7조제4호)
- 3)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도 가사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 발급하도록 추가(안 제7조제5호)
- 4) 예외적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공공기관 단기출장자)의 유효기간 1년 이내로 제한(안 제9조제1항제1호)
- 5)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화(안 제10조제1호)
- 6)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도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으로 추가(안 제10조제1호)

다. 기타 제도 개선 반영 및 현행 법령 미비점 정비

- 1) 알기 쉬운 용어 정비 : ‘신원정보면’→‘개인정보면’(안 제3조)
- 2) 여권의 재발급 제출 서류 중 재발급 사유서 삭제(안 제18조제1항제2호)
- 3) 재발급한 여권의 수록정보와 기재사항이 기존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조문 삭제(안 제18조제2항)
- 4)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사유에서 ‘사증란의 추가’삭제 및 ‘출생지의 기재’ 추가(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5) 여권사무대행기관 대상 평가 진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37조제4항)
- 6) 여권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사항 명시(안 제45조, 제46조, 제47조)

- 7) 여권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근거 명시(안 제48조제2항)
- 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업무에 여권 정보증명서 발급 및 여권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사무 추가(안 제49조제9호 및 제10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상단과 하단에는”을 “우측 상단부터 나라문장(紋章),”으로, “표기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되”를 “표기하고”로, “표지의 하단”을 “표지의 우측 하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여권: 남색(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26면 또는 58면).

제2조제3항제1호 단서 중 “24면으로 하고, 비전자 단수여권은 14면”을 “26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용여권: 진회색(26면 또는 58면)

3. 외교관여권: 적색(26면 또는 58면)

4. 긴급여권 : 청색(12면)

5. 여행증명서: 검정색(12면)

제3조제1항 전단 중 “신원정보면”을 “개인정보면”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한 신청(이하 “온라인 여권신청”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여권 신청이 가능한 이용대상자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중인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온라인 신청 여권의 교부 거부) 외교부장관은 온라인 신청 여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여권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여권의 사진과 여권 명의인의 실물이 명백히 상이한 경우
2. 허용되지 않는 규격의 사진인 경우
3.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7조제1호나목 중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한국은행 및”으로, “직원”을 “직원.”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무 국외여행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

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2호 중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한국은행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배우자 및”을 “배우자,”로, “자녀”를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1년 이내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 외교부장관이 지정한”으로,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4. 여권용 사진 1장.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증란의 추가, 구(舊) 여권번호”를 “구(舊)여권번호, 출생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를 “재외공관의 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권한대행자가”를 “사무대행자가”로, “점검”을 “점

검·평가”로, “권한대행자에게”를 “사무대행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권한대행자”를 “사무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권한대행자가”를 각각 “사무대행자가”로 한다.

제12장의 제목 “보칙”을 “여권정보처리 시스템”으로 한다.

제45조를 제48조로 한다.

제46조를 제49조로 하고,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관, 관리
2. 법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 교부에 관한 정보 입력, 관리
3. 법 제12조에 따른 여권 발급 거부·제한에 관한 정보 입력, 관리
4. 법 제13조 제2항, 제19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정보 입력, 통지서 출력
5. 법 제15조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정보 입력, 관리
6. 법 제16조에 따른 여권 부정행위 관리 및 정보 입력, 관리
7. 제3조의2에 따른 로마자성명 변경 등 업무에 관한 정보 입력, 관리
8.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재요청·해제에 관한 정보 입력, 관리
9.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정보 입력 및 관리

10. 제1호부터 제8호에 관한 기록 조회

11. 그밖에 여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교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스템의 구축·운영, 보안, 담당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제45조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구축·운영한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여권 진위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정보 제공

2. 금융기관 또는 그 종사자와 거래하려는 자의 여권 진위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그밖에 국내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

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와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이하 “여권 정보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심사결과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종전의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의 심사완료 사실, 수령안내 등을 여권 명의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외교부장관은 제45조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제46조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이용·활용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용·관리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활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

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중전의 제45조)의 제목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관한 사전통지)”를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와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로 한다.

제49조(중전의 제46조)제9호 중 “제45조”를 “제46조”로,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를 “진위, 여권명의인의 신원확인 및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8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와 발급 사실 등 통지에 관한 사무

별표 제1호제1호가목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여권발급수수료의 국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면: 35,0
00원
58면: 38,0
00원

별표 제1호제1호가목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여권발급수수료의 재외공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면: 35
달러
58면: 38
달러

별표 제1호제1호가목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면: 7,700
원

58면: 8,360
원

별표 제1호제1호가목 5년의 여권발급수수료의 국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면: 30,0
00원
58면: 33,0
00원

별표 제1호제1호가목 5년의 여권발급수수료의 재외공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면: 30
달러
58면: 33
달러

별표 제1호제1호가목 5년의 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면: 6,600
원
58면: 7,260
원

별표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표 제3호 라목의 “여권 사실증명” 수수료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인터넷 이용시에는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법의 시행일) 법률 제16025호 여권법 부칙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20년 12월 21일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여권의 규격 등) ① (생략)	제2조(여권의 규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 표지의 <u>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의 종류를 표기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되, 법 제7조제1항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하단에 추가한다.</u>	② ----- ----- <u>우측 상단부터 나라문장(紋章),</u> ---- ----- ----- <u>표기하고</u> ----- ----- ----- ----- ----- ----- ----- ----- <u>표지의 우측 하단</u> ----.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
1. <u>일반여권: 녹색(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24면 또는 48면).</u>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u>24면으로 하고, 비전자단수여권은 14면으로 한다.</u>	1. <u>일반여권: 남색(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26면 또는 58면).</u> ----- -- <u>26면</u> ----- -----.
2. <u>관용여권: 황갈색(24면 또는</u>	2. <u>관용여권: 진회색(26면 또는</u>

을 면제할 수 있다. <후단 신
설>

1. (생략)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3. (생략)

<신 설>

<신 설>

-----).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illegible]

3. (현행과 같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여권 신청이 가능한 이용대상자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중인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신 설>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
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
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
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
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
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

있다.

제5조의2(온라인 신청 여권의 교
부 거부) 외교부장관은 온라인
신청 여권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동 여권의 교부를 거
부하거나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여권의 사진과 여권 명의인
의 실물이 명백히 상이한 경
우
2. 허용되지 않는 규격의 사진
인 경우
3.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

-----.

1. -----

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생략)

나.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또는 직원
<단서 신설>

2.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 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3. (생략)

4.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가. (현행과 같음)

나. 한국은행 및 -----

----- 직원.
단, 공무 국외여행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한국은행 및 -----

3. (현행과 같음)

4. -----

----- 배우자, -----

의 미혼인 자녀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
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
가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6. (생략)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
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여권용 사진 1장. 다만,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4. (생략)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

-----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5. -----

----- 국
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6. (현행과 같음)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

-----.

1. 2. (현행과 같음)

3. 여권용 사진 1장.

4. (현행과 같음)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 -

-----.

할 수 있다.

<신 설>

1. ~ 3. (생략)

② (생략)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
을 발급할 수 있다.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
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
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
무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라. (생략)

2. ~ 5. (생략)

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단
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

1. 제7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1년 이내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

1. -----

----- 위원,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

----- 국가공
무원 , 지방공무원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여권용 사진 1장. 다만,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4. (생략)

제18조(여권의 재발급) ①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재발급 사유서. 다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생략)

4. 여권용 사진 1장. 다만,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5.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여권용 사진 1장.

4. (현행과 같음)

제18조(여권의 재발급) ①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4. 여권용 사진 1장.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권의 수록정보와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① 법 제15조에 따라 사증란의 추가, 구(舊) 여권번호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 중 사증란의 추가는 여권 사증란 중 좌우면에 사용되지 아니한 공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24면까지 추가할 수 있다.

제37조(사무의 대행)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 ②·③ (생략)

<삭 제>

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① ----- 구(舊)여권번호, 출생지-----

--.

<삭 제>

제37조(사무의 대행) ① -----
----- 재외공관의 장-----

-----.

1. ~ 8.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 지 점검할 수 있으며, 대행 사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대행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2장 보칙

<신설>

④ ----- 사무대행자가

-- 점검·평가-----

---- 사무대행자에게 -----

----- . ----- 사무대행

자-----
-----.

⑤ ----- 사무대행자가

----- 사

무대행자가 -----

-----.

⑥ (현행과 같음)

제12장 여권정보처리 시스템

제45조(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운영) ① 외교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

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관, 관리
2. 법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 교부에 관한 정보 입력, 관리
3. 법 제12조에 따른 여권 발급 거부·제한에 관한 정보 입력, 관리
4. 법 제13조 제2항, 제19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정보 입력, 통지서 출력
5. 법 제15조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 입력, 관리
6. 법 제16조에 따른 여권 부정행위 관리 및 정보 입력, 관리
7. 제3조의2에 따른 로마자성명 변경 등 업무에 관한 정보 입력, 관리
8.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재요청·해제에 관한 정보 입력, 관리
9.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정보 입력 및 관리
10. 제1호부터 제8호에 관한 기

<신 설>

록 조 회

11. 그밖에 여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교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스템의 구축·운영, 보안, 담당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제45조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구축·운영한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여권진위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정보 제공

2. 금융기관 또는 그 종사자와
거래하려는 자의 여권 진위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그밖에 국내에서 여권을 신
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
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와 동일인으로 지
정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주민등록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민원발
급기 또는 「전자정부법」 제9

<신 설>

조의2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
구를 통하여 법 제23조의2 제3
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이하 “여권 정보증명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
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외교부장
관은 심사결과 여권정보연계시
스템을 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
· 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외교부장관은 제45조의 여
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제46
조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이용
· 활용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
용·관리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
으며,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
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관한 사전통지) (생략)

<신 설>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
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
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제45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
기간 만료 사전통지에 관한
사무

활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
다.

제48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와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외교부장관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의 심사완료 사실, 수령안내 등을 여권 명의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46조----- 진위,
여권명의인의 신원확인 및 여
권정보증명서 발급-----
--

<u><신 설></u>	<u>10. 제48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 기간 만료와 발급 사실 등 통 지에 관한 사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여권과	
연 락 처	(02) 2002 - 0133